

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 : 1999. 5. 29
-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6. 10

다. 의안번호 : 제 99-20 호

2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폐지사유

-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 있으며, 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에 대한 법률위임근거가 없는 등 거창군호적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

3. 검토의견

- 거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85년 5월 31일(조례 제833호) 제정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,
-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, 본 조례가

폐지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·징수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므로,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

4. 참고사항

○ 호적법(제132조의2)

제132조의2(과태료의부과·징수) ① 제130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읍·면의 장(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·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·구청장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이를 부과·징수한다 <개정 90.12.31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·읍·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읍·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·읍·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주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(非訟事件節次法)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○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

제52조(과태료 부과) ① 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초고한 시·읍·면의 장이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

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④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·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·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 <개정 95.12.26>
- ⑤ 삭제 <95.12.26>
- ⑥ 시·읍·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<개정 95.6.5>